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78 발의연월일: 2021. 3. 18.

발 의 자:윤재갑·문진석·신정훈

양정숙 · 용혜인 · 위성곤

윤준병 • 이개호 • 전용기

강선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 탁경영을 인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현행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및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도 1만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있도록 허용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. 한편, 농지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재산등록 대상자도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,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를 청년농,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,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 속 공무원 중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등의 농지 소 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23조, 제54조의3 신 설). 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"제4호부터"를 "제6호부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"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"를 "소유하고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"를 "소유하고"로 한다.

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3(소속 공무원 등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)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속·직계비속의 농지 소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농지의 임대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농지 소유 상한) ① ~ ③	제7조(농지 소유 상한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	<u><삭 제></u>
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	
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	
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	
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	
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	
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.	
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	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
대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	대차) ①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	
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	
게 할 수 없다.	,
1. 제6조제2항제1호 · <u>제4호부터</u>	1 <u>제6호부터</u> -
제9호까지・제9호의2 및 제1	
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	
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	
하는 경우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7
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	
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	

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

- 가.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
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

8. • 9. (생략)

② (생 략)

<신 설>

가
/f
入り
<u>소유</u>
취. ㄱ
하고
나
1 •
소유하고
<u>— 11 1 — </u>

- 8. 9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4조의3(소속 공무원 등의 농 지 소유 현황 공개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 른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배 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・직 계비속의 농지 소유 현황을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

<u>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하여</u> 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